

2월 1주차 시장

인보험 시장 [2/1~8]

200% [13회차]

구간	10만↑	20만↑	30만↑	50만↑
시상	20만	40만	60만	100만

통합,간편,어린이 시장 [2/1~8]

100% [13회차]

구간	10만↑	20만↑	30만↑	50만↑
시상	10만	20만	30만	50만

※ 상품【통합】알파Plus보장보험, The좋은 알파Plus보장보험, 내Mom대로 보장보험, The좋은 내Mom대로 보장보험, The건강한 5.10.5보장보험, The건강한 내Mom대로 5.10.5보장보험

[간편]통합간편건강보험(통합간편심사형, 일반심사형), 통합간편건강보험(355입원, 수술고지간편심사형),

통합간편건강보험(II)(통합간편심사형, 일반심사형), 통합간편건강보험(II)(355입원, 수술고지간편심사형), 간편31 건강보험, The가벼운 간편355건강보험

[어린이] 내Mom같은 어린이보험, 내Mom같은 어린이보험(태아전용)

NEW 

1월~2월 연속가동 시장

[13회차]

1월~2월 추가 연속가동 시장 [13회차]

최대 300%	1/19-31	2/1-18	시상	최대 300%	1/26-31	2/1-18	시상
	10만	10만	20만		10만	20만	10만
	20만		60만		20만		45만
	30만		80만		30만		80만
	50만		180만		50만		180만

2월 정규 시장

200% [억월]

300% [억월]

인보험	재물 & 단체	펫퍼민트(반려동물)
200% (펫퍼민트 제외)	100%	300%

메리츠클럽 플러스(MC PLUS+) 시장

[13회차]

1,2,3월 연속	20만↑	40만↑	60만↑	80만↑	100만↑
시상금	60만	120만	180만	240만	300만

※ 상기 모든 시책은 사용인 시상 공통기준 적용 (메리츠 함께하는 단체보험, 펫퍼민트 인보험 시상 제외 별도 시상 적용)

[2차년 환수기준] 미유지로 인한 시책 *차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해 추가로 환수

2차년지급회차기준	+14회	+15회	+16회	+17회	+18회	+19회	+20회	+21회	+22회	+23회	+24회
환수율(%)	95	90	80	70	60	55	50	40	30	20	10

※ 23.6월부터 2차년도 미유지 환수 기준 신설. 세부사항 확인 必

✓ 시책 공통기준

실적인정 기준

- 인보험월납(모든마감은 시책월 마감까지 입력완료 / 주차: 각 주차마감일까지(청약일) 입금완료 및 익일 입력완료)
- 당월 신계약 당월 취소, 철회시 실적 인정
- 기준 계약 취소후 재가입건 인정
- 태아보험 : 태아전용의 경우 출생후 보험료로 지급
 그외 태아보험의 경우 신계약입력당시, 출생전이 출생후 보험료보다 크거나 같으면 출생후 보험료로 지급
 (출생전이 출생후보다 작으면 출생전 보험료로 지급)
- 인보험 건당보험료 30만원↑건 30만원으로 적용
 운전자보험 건당보험료 10만원↑건 10만원으로 적용(단체계약형은 피보1인당 10만원 적용)
- 이복구비월납 10만원 이상 중 보장P 60%↓보험료 10만원만 인정
- 인보험 : 보장보험료 구성비 15%↑ 재물보험 : 보장보험료 구성비 10%↑

실적 제외

- 실손의료비보험 전체(유병력자, 노후실손 포함)
- 취급자계약_당월코드발생포함(계약자, 피보험자, 수익자), 내근 계약
- 보험료 5만원 이상 중 1년납, 3년납, 5년납 계약
 (함께하는 단체보험, 펫퍼민트(PUPPY,CAT), 재물보험 적용 제외)
- 메리츠함께하는단체보험, 펫퍼민트(PUPPY,CAT) 인보험 시상은 제외_상품 개별 시책 적용
- 메리츠함께하는단체보험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까지 인정/ 3년, 5년납은 50% 인정
- 승환율 고지사 (*별도안내)
- 불완전판매 의심계약 제외

13회차 지급 기준

- 지급 : 13회차 유지 확정후(13회차 응당월 익익월 지급)
 ex. 2026년 2월 신계약 → 2027년 4월 지급
- 실적합산 : 취소/철회 건은 최초 신계약 실적에서 제외 합산
- 구간미유지 : 유지실적 x 지급율(신계약모집기준)
- 구간유지 : 모집당시 확정 시상금액
- 연속가동시상 : 연속가동월 중 한 달이라도 13회차 유지실적이 0원일 경우 시상금 부지급(연속가동 아님으로 판단)
- 납입면제(계약 정상유지 시) 및 피보험자 사망(계약해지) 건은 환수 제외 → 13회차 보험료 미납입시 시상금 부지급

환수 기준

※ 시책환수 공통기준

- 미유지에 따른 차수별 환수율 적용 (미유지 환수 후 부활 유지불인정)
 - * 미유지: 취소, 철회, 품보취소, 실효, 해지, 감액 (취소, 철회, 품보취소는 100% 환수)
- 태아보험 : 태아등재월 유지1차수 적용
- 가입월~태아등재월 미유지 100% 환수 이후 회차별 환수
- 미유지에 따른 차수별 환수율(1회 미유지 100% / 2차년도 정산지급월 미유지시 부지급)
- * 미유지 실적 x 환수율

1차년도	2회차	3회차	4회차	5회차	6회차	7회차	8회차	9회차	10회차	11회차	12회차
2차년도	14회차	15회차	16회차	17회차	18회차	19회차	20회차	21회차	22회차	23회차	24회차
환수율(%)	95	90	80	70	60	55	50	40	30	20	10

- 미유지로 인한 시책 환수에도 *차익 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해 추가로 환수

*차익:(수수료+시책+해지환급금)-(납입보험료+환수금액)

*차익거래 점검시 25회차 이후부터는 해약환급금을 반영하지 않음(보험업감독규정 제4-32조 6항 준수)

- 2023년 6월 시상부터 2차년도 미유지 환수 기준 신설

- 물품지급 : 구입단가 환수